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센터운영규정 중 일부 발췌

제7조(입소정원 및 모집방법)

가. 당 기관의 입소정원은 09명으로 한다.

나. 서비스 수급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(1)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를 통한 기관홍보
- (2) 상담 - 전화 상담 후 방문
- (3) 기존 수급자의 지인소개
- (4)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추천
- (5) 지역사회 병원 및 단체, 지역모임 등에 참석하여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, 이용자를 확보한다.
- (6) 도로 현수막 홍보 및 기관 홍보용품(카렌다)을 제작하여 지역에 홍보한다.

제8조(입소계약에 관한 사항)

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. 계약기간 - 입소의뢰나 신청시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,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고, 유효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통해 입소기간을 연장한다.

나. 계약목적 -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(기관)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며, 상호 권리를 보호함에 목적을 둔다.

다. 본인부담금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.

- (1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.
- (2)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경감율에 따라 경감한다.

라.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. 단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(고시)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개정(고시)에 따른다.

마. 그 밖의 기타 이용부담액 중 식대, 간식비, 병원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고,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.

구 분 / 기준수가(30일 기준)		1등급	2등급	3등급
		72,480원	67,250원	62,000원
		2,174,400원	2,017,500원	1,860,000원
본인부담	일반(20%)	434,880원	403,500원	372,000원
	경감(40% - 12%)	260,920원	242,100원	223,200원
	경감(60% - 8%)	173,950원	161,400원	148,800원
	기초수급자	국민건강보험, 지방자치단체 지원		
비급여	식재료/간식비	1식 3,000원 * 1일 3회 * 30일 = 270,000원		
	이미용비	이, 미용사 내원 서비스시 = 실비청구 자원봉사자 내원 서비스시 = 커트(무료)/퍼머(약값)		
	상급침실이용료	-		
	외래진료비	병원비 및 약제비 실비 청구		
본인부담총액	일반(20%)	704,880	673,500	642,000
	경감(40% - 12%)	530,920	512,100	493,200
	경감(60% - 8%)	443,950	431,400	418,800
	기초수급자	국민건강보험, 지방자치단체 지원		

바.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

(1) 권리

- 가)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나)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다)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
- 라)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마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

(2) 의무

- 가)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
- 나)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
- 다)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
- 라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마) 이용자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, 비품 등의 파손 및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
- 바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

(3) 계약의 해제 -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.

- 가)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 - 나)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 - 다)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시설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
 - 라)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- 사. 이용료 등 수납 -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.
- 아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-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.

제9조(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)

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,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,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, 수급자(보호자)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.

제10조(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)

가. 서비스의 내용

- (1)시설급여 :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 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·향상을 위한 교육·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
나. 서비스의 세부사항

(1) 신체활동 지원

-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몸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목욕도움, 화장실 이용하기, 기저귀 교환, 식사 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,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, 프로그램 진행 등

(2) 개인 활동 지원

- 외출동행, 병원안내 및 동행, 산책동행, 각종 정보안내,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

(3) 정서지원

- 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 등

(4) 치매관리 지원

- 행동변화 대처, 프로그램 진행

(5) 기능회복훈련

- 신체기능의 훈련, 기본동작훈련, 일상생활동작훈련, 물리치료, 작업치료, 인지 및 정신기능훈련, 언어치료

(6) 간호 및 처치

- 관찰 및 측정, 혈압-체중 등, 투약 및 주사, 호흡기간호, 피부간호, 영양간호, 통증간호, 배설간호,

(7) 그 밖의 처치

- 기관절개관 간호, 위독시 간호 등, (의사진료보조)

(8) 시설환경관리

- 침구·린넨 교환 및 정리, 환경관리, 물품관리, 세탁물관리 등

나.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

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,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.

제11조 (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)

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및 비용은 다음과 같다.

- (1)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얻어 이를 제공한다. 특별한 보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불은 수급자 및 보호자가 100%를 부담하며 수가와 동일하다.
- (2) 수급자의 신체적,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얻고 억제 및 이동제한을 하는 경우 개인 급여제공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 하여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.

제12조(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)

가.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

- (1)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대응 지침에 따라 행동하며, (협약)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.
- (2)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,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.

나. 병원진료

- (1)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(협약)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.

- (2)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기관이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,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 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제13조(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)

가. 거실의 출입

- (1) 시설은 수선, 보전, 위생, 방범,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어 언제나 거실 내에서 출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.
- (2) 시설은 입소인이 1일 이상 부재일 경우 및 입소인의 건강, 재해상의 긴급시에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지 않고 언제나 거실 내에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.

나. 장기간 부재

입소인이 거실에 1일 이상에 걸쳐서 외박할 경우가 발생할 시는 입소인은 시설에 미리 그에 관한 사정을 제출함과 동시에 그 거실의 보전, 연락방법 등에 대하여 시설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다. 원상회복의 의무

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, 파손 또는 멸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.

라. 시설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

입소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.

- (1) 거실에 대하여 문향 바꿈 기타 공작을 할 때
- (2)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
- (3) 부지 내에 있어서 자동차를 보유하려고 할 때
- (4) 이 계약 이외에 제3자를 동거케 하려고 할 때
- (5)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
- (6)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

마. 사용상의 주의사항

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 내 종사자의 도움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, 위험공간의 출입 및 전기 등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조작을 삼가고, 시설은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조치를 취하여 입소인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바. 동물 사육의 금지

입소인은 거실 또는 부지 내에 있어서 동물을 사육해서는 안 된다.

제14조(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, 면책범위에 관한사항)

가. 배상책임 - 서비스 제공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나 누락 등으로 인해 수급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할 의무를 지며, 기관은 (전문인, 영업)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나. 면책사항 - 서비스 중 자연 사망하였을 때, 대상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, 사망시, 대상자 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에는 본 기관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